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6. 12. 23.

산업. 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1996. 11. 21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6. 12. 20
- 라. 상정일자 : 1996. 12. 23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윤병규)

가. 제안이유

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도로점용료 산정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전기관및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경우 지금까지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3조제6항).
- 주요 지하매설물인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의 직경크기가 확대됨으로 현실에 맞도록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함(별표1의 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 론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1996. 11. 21.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의안 번호	120
----------	-----

1. 제 안 이 유

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도로점용료산정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가.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등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3조제6항).
- 나. 주요지하매설물인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전기관, 전기통신관등의 직경크기가 확대됨으로 현실에 맞도록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조정함(별표1의 제2호).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 및 제7항을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결사한다.

⑥별표1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⑦별표1의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양카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1의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생략)</p> <p>②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u>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u>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p> <p>③~④(생략)</p> <p>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에는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 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현행과 같음)</p> <p>②점용료의----- -----<u>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u>----- ----- ----- -----</p> <p>③~④(현행과 같음)</p> <p>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p> <p>⑥별표1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p> <p>⑦별표1의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p>		

현행	개정안
<p>⑥(생략)</p> <p>⑦(생략)</p> <p>제7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p> <p>②(생략)</p>	<p>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양카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p> <p>⑧(현행 제6항과 같음)</p> <p>⑨(현행 제7항과 같음)</p> <p>제7조(징수) ①점용료를 ----- ----- -- . 다만,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2.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직경 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150
		직경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300
		직경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600
		직경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900
		직경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1,200
		직경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1,500
		직경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2,250
		직경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3,750
		직경 3.0미터 초과			5,250
	기타의 관	직경 0.1미터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직경 0.1미터 초과 0.2미터 이하			450
		직경 0.2미터 초과 0.4미터 이하			900
		직경 0.4미터 초과 0.6미터 이하			1,350
		직경 0.6미터 초과 0.8미터 이하			1,800
		직경 0.8미터 초과 1.0미터 이하			2,250
		직경 1.0미터 초과 2.0미터 이하			3,350
		직경 2.0미터 초과 3.0미터 이하			5,600
직경 3.0미터 초과		7,850			